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06
----------	-------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박성민·정동만·구자근
김민전·서천호·박덕흠
이양수·엄태영·윤영석
이종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임신·출산으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 발생,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이유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여전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상향함으로써 모성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

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5년”을 “7년”으로,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

② 사업주가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2.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
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
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4. ~ 9. (생략)

③ 사업주가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
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
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
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에
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신설>

<신설>

<삭제>

4. ~ 9.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를 한-----
-----.

1.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
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
우

2. 제19조의3제3항 또는 제22조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9조제1항·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5.·6. (생략)

의4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육아기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한 경우

⑤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6. (현행과 같음)